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50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백혜련·김남국·김용민

김종민 • 박범계 • 박주민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9. 12. 3 0.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, 2020. 1. 14. 공포되었음.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, 「범죄인 인도법」상 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(안 제42조제2항, 제42조의2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2항 중 "검사장·지청장"을 "검사장·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"으로, "명할 수 있다"를 "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42조의2제1항 중 "명령을 받은 검사장·지청장"을 "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"으로 한다.

제42조의3제1항 중 "검사는"을 "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" 으로, "건의"를 "건의 또는 요청"으로 한다.

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"검사는"을 "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"으로. "건의"를 "건의 또는 요청"으로 한다.

제4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	제42조(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	2
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	
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	
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	
하다고 인정되는 <u>검사장·지청</u>	검사장·지청장
<u>장</u>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<u>명할</u>	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-
<u>수 있다</u> .	<u>명</u> 하
	거나 요구할 수 있다.
제42조의2(검사장 등의 조치) ①	제42조의2(검사장 등의 조치) ①
제42조제2항에 따른 <u>명령을 받</u>	<u>명령 또는</u>
<u>은 검사장·지청장</u> 등은 소속	요구를 받은 검사장·지청장 또
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·작	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
성·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	
도록 명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2조의3(검사의 범죄인 인도청	제42조의3(검사의 범죄인 인도청
구 등의 건의) ① <u>검사는</u> 외국	구 등의 건의) ① <u>검사 또는</u>
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	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
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	
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	
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	

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<u>건의</u>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 제42조의4(외국에 대한 동의 요 청) ① (생 략)
-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. 이 경 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. 제47조(검찰총장 경유)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 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·지청 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 게 하는 건의·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

다. <단서 신설>

건의 또는 요청
② (현행과 같음)
제42조의4(외국에 대한 동의 요
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
<u> 수사처장은</u>
건의 또는 요청

제47조(검찰총장 경유)
<u>다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
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